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순 서

□ 5분 자유발언 : 3명

- 신중양 의원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도 관심을 가지자
- 박수자 의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김향란 의원 : 외국인 근로자와 공존하는 시대의 발전적 제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 고 자 : 박수자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보 고 자 : 이흥희 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조례안 1)
- 보 고 자 : 신미정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4건(조례안 13, 일반의안 1)
- 보 고 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9건(조례안 9)
- 보 고 자 : 최준규 위원장

□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 사 일 정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 24.(화)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2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3 ※ 의회운영위원회 : 4 ※ 총무위원회 : 5~18 ※ 산업건설위원회 :

부 의 안 건	비 고
20. 거창군 애우 배넷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산 회】	19~27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6. 24. 10:00)

5 분 자 유 발 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도
관심을 가지자**



신 중 양 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중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창군의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이후의 변화와 교통약자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의 교통흐름을 보면 출퇴근 시간의 러시
아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아주 원활한 흐름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운전 환경으로 정착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된 34개의 회전
교차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군민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

34개의 회전교차로를 보면 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 7기 이후에 설치된 것이며, 24개가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수님과 집행부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교차로의 설치로 교통흐름은 개선되었지만, 일부 회전교차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곳도 있고,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어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조성된 김천리 회전교차로와 장팔리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를 해소 하려 조성된 길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차선이 좁아져 차량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횡단 보도를 건너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는 듯 합니다.

또한, 한들대교 남단이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했지만 대형차량의 회전이 어려워 다시 조성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변 푸르지오에서 한들대교까지 약3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어느 한 곳 잠시라도 차량이 멈추는 곳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이어지는 긴 차량 행렬로 인해 보행자들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너무 작은 회전교차로로 인해 이게 회전교차로인가 하는 곳도 더러 있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쉽고 개선해야 될 것은 교통 약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가 조성되고 나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은 존재의 의미를 잃은 채 서 있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현재의 회전교차로 시스템에서는 누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무단 횡단을 잘하는지가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군민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건널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함은 있으나, 교통약자인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직까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다수의 운전자들이 양보 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하염없이 횡단보도만 바라보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군 관내 94개의 고원식 횡단보도와 13곳의 스피드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이 시설이 얼마나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늘 꼭대기에 있는 스피드디스플레이를 보며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행자의 안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전교차로 사업은 운전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인구 현황을 보면 거창읍에 65세 이상 인구는 8,91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의 학생 수는 2,783명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창읍 전체인구를 4만으로 본다면 29%정도의 인구가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동안만이라도 푸르지오와 한들대교 구간에 점멸등이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 있어 한시적인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행안부에서 고안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음성안내 장치의 도입이나,

화성특례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한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을 검토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개선이 운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서로 웃으며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6. 24. 10:00)

5 분 자 유 발 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박 수 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0.75”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거와 양육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를 때
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주거 안정성만 확보돼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사례로 우리 군의 자매도시인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평균 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도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몰리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와 천원주택, 서울 동작구의 만원주택 등 유사한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기업 아파트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를 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합계출산율 2.95명이라는 기적을 낳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 나기초 마을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수준의 작은 마을로서 가장 놀라운 점은 마을의 3분의 1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2007년부터 마을 공동 무료 육아 거점인 ‘나기 차일드홈’을 운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육아상담원을 두어 아이와 부모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이미 육아를 마친 노인 등 기성세대들도 공동 육아에 참여하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과 달리, 주민 간 공동육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은 육아의 안정감을 한껏 높였을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경제 지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자체가 소규모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여 거창군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들어설 거창 의료복지타운의 육아드림센터가 바로 공동 육아 거점의 역할을 해내야 할 곳이며, 완공이 되기까지 공백이 있으니 현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를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인구 급감 사태가 몰고 올 지방소멸의 위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단순 현금 살포식 지원책
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와
양육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6. 24. 10:00)

5 분 자 유 발 언

**외국인 근로자와
공존하는 시대의 발전적 제언**



김 향 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인모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 향 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요즘 보리 수확한 자리에 모내기할 때 필요한 비가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이다 보니 일손 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양파 농가는 마음만 바쁘고 굶은 날씨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지만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2024년과 대내외적인 위기인 2025년의 딱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그 간의 사업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 본의원 오분 발언 이후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고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가에 보내주어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농촌인력난 해소 일반 운영비확보,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에 예산 편성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꾸어 당시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22년 246명, 23년 322명, 24년 502명, 올해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일당 8만원 5개월 이상 장기계약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일당 8만 1천원에 70여명을 필요한 농가에 북부농협에서 매일 보내주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군 거창은 계절근로자 없이 농사짓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는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으로 . 정부 평가 5관왕을 수상하고 공영방송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인 지자체이기에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그간의 어려운 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을 돌파했지만 지자체는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인지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 중심으로 출입국심사와 비자 발급등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근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아 정책적인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자체 행정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탓에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 과정에
지자체 협력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감한 분권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역 간 정책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기에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이민청 설립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노동집약성과 계절적 특성이 강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도 마련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 추진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인권 의식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 및 현장실사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노동력으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포용하는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공존의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특성화 사업과 무료 진료와 이·미용

서비스사업은 사회적 제도가 인간적 배려와 만나는
공존의 실천이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5. 5. 3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5. 5. 30.
-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나.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90,576	987,882	789,547	198,335
일반회계	924,504	918,754	740,498	178,256
특별회계	66,072	69,128	49,049	20,079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90,576	993,052	987,882	414	4,756	99.7	99.5
일반회계	924,504	923,569	918,754	414	4,401	99.4	99.5
공기업 특별회계	48,273	51,401	51,112	0	289	105.9	99.4
기타 특별회계	17,799	18,082	18,016	0	66	101.2	99.6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19,598	170,978	990,576	789,547	138,525	5,732	56,772
일반회계	765,410	159,094	924,504	740,498	126,595	5,716	51,695
공기업 특별회계	39,389	8,884	48,273	36,706	8,433	0	3,134
기타 특별회계	14,799	3,000	17,799	12,343	3,497	16	1,943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2건	2,389	156	156	

☐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전용은 총 12건이며 예산액 2,389백만원 중 156백만 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12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5) 계속비 결산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19건)	71,345	29,255	40,636	1,454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756	1,701	45	10
다누리복합문화센터조성	1,000	0	1,000	0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5,917	1,605	4,310	2
청년창업지원센터	5,750	0	5,750	0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9,090	7,227	554	1,309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2,988	34	2,954	0
배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	2,476	2,469	0	7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2,624	136	2,488	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2,892	1,784	1,108	0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822	3,496	7,326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4,661	1,260	3,275	126
신활력플러스사업	3,815	1,071	2,744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499	1,017	482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3,922	1,181	2,741	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거창읍)	1,841	349	1,492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800	36	764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4,897	4,746	151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803	35	768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792	1,108	2,684	0

심 사 의 견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19건에 29,25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건에 28,147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1,108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9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3건	642	625	0	17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발	호우피해 재난복구	539	523	0	16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77	76	0	1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이상기후에 따른 농 작물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26	26	0	0

심 사 의 견

-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642백만원이며 그 중 62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호우 피해 재난복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자연 재난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검토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
계		267	419,270	138,528	33
명시 이월	일반회계	81	122,859	41,783	34
	담주변	1	1,360	480	35
	상수도	3	8,384	3,335	40
	하수도	6	10,550	4,527	43
사 고 이 월	일반회계	137	206,412	47,567	23
	산업단지	1	1,372	333	24
	상수도	2	6,617	108	2
	하수도	3	2,953	461	16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	31	54,971	37,245	68
	산업단지	2	3,792	2,689	71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9종)	94,532	△17,548	45,528	63,076	76,984
식 품 진 흥 기 금	133	0	48	48	133
중소기업육성기금	5,137	△532	171	703	4,605
사 회 복 지 기 금	2,523	49	89	40	2,572
재 난 관 리 기 금	3,484	△195	894	1,089	3,289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13	12	16	4	525
옥외광고발전기금	336	19	41	22	355
체 육 진 흥 기 금	1,102	16	36	20	1,1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836	△17,292	43,708	61,000	63,544
고 향 사 랑 기 금	468	375	525	150	843

심 사 의 견

-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532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5,528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3,076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984백만원임.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금결산에 연도말 잔액에 대한 반납, 수납처리 등 사유 발생 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내 반납처리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사용액이 620억원인데 신규 대형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정 충당으로 보여짐.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9) 채권액 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9,550	3,479	1,930	11,099
일반회계	2,501	113	236	2,378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7,049	3,366	1,694	8,721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550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479백만원이 발생하고, 1,930백만원이 소멸하여 1,549백만원이 증가한 2024년도말 현재액은 11,09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 채권 10,897백만원, 기타채권이 59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 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이며, 기타채 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 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대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되며 세외수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10) 채무액 결산

○ 해당사항 없음

11) 보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68,790	361,681 (123,067)	301,628	50,401	9,652
일 반 회 계		365,006	357,897 (123,067)	297,861	50,401	9,635
특 별 회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0	30	30	0	0
	의료급여기금	181	181	171	0	10
	수질개선	3,573	3,573	3,566	0	7

※ ()안은 군비 부담액임.

심 사 의 견

- 2024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61,681백만원으로 집행액은 301,628백만원, 이월액 50,401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652백만원임.
-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23,06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34%에 해당됨.

전 체 심 사 의 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액은 1,127,942백만원, 총 세출액은 852,62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75,318백만원임. 세입대비 24.40%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반회계 세입은 918,7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961백만원 (2.3%)이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로 보여짐.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21,626백만원(35%)이고, 보조금 234,857백만원

(25.5%), 조정교부금 30,678백만원(3.3%), 지방세는 40,629백만원
(4.4%), 세외수입은 30,963백만원(3.3%)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7%)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3.9%)의 비율이 8배 가량 높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 세출은 852,62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5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농림해
양수산 151,127백만원, 사회복지 164,801백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
68,735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행정(41%), 보건
(28%)분야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음.
- 평균 집행률은 80.1%이며, 국도 및 지역개발이 63.4%로 집행
률이 가장 낮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
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
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전년
도말 조성액 94,532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5,528백만원을 합
산한 140,061백만원이며, 사용액이 63,077백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6,984백만원임.
- 기금결산에 연도말 잔액에 대한 반납, 수납처리 등 사유 발생 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내 반납처리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

- 당해년도 조성액은 45,528백만원이고, 사용액은 63,076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17,548백만원이 더 많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414백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보류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203백만원으로 49.01%를 차지함.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체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 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2024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25건 153백만원을 전액 미집행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2024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25건	153,231		153,231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2,500	0	2,500	
2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20,000	0	20,000	
3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사업	13,000	0	13,000	
4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11,500	0	11,500	
5	목재수확 점검관리	4,278	0	4,278	
6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19,300	0	19,300	
7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차지원 사업	4,000	0	4,000	
8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사업	6,000	0	6,000	
9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0,000	0	10,000	
10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2,000	0	2,000	
11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11,340	0	11,340	
12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17,500	0	17,500	
13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1,600	0	1,600	
1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0	0	2,000	
1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900	0	900	
16	거창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4,573	0	4,573	
17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0	0	10,000	
1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3,000	0	3,000	
19	범죄예방환경조성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	1,000	0	1,000	
20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4,000	0	4,000	
21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480	0	480	
22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900	0	900	
23	대중교통 운행 지원	160	0	160	
24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2,500	0	2,500	
25	임대농기계 및 순회교육	700	0	700	

- 거창군에서 수립한 성과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목표 75개 추진을 위한 212개의 정책(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 하였으나
- 대상사업 작성 누락,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또한, 시설공사 20억원 이상, 조사연구용역 건당 3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대형 사업이므로,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동하여 성과 목표를 관리하여야 하나 시설공사 6건은 성과보고서 작성이 누락되었으며,

★ 2024년 주요사업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당해연도사업비	
전략담당관	화장시설 건립	23,300	100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407	2,186	
안전총괄과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478	160	
산 림 과	문화관광자원개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11,700	(11,700)	차수별추진
도시건축과	상동 도시재생인정사업	6,530	(6,530)	
체육시설사업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2,000	2,393	

- 계속비와 이월 사업도 해당연도 내 사업예산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성과 목표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12건의 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부서별 이월사업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속비	행복농촌과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26	
명시 이월	전략담당관	경남별장조성	980	
	문화관광과	남부권 특화 진흥사업(ESG)	20	
		남부권 특화 진흥사업(웰니스)	40	
	행복나눔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31	
	안전총괄과	고건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11	
	건설교통과	도재정건의사업 추진	50	
사고 이월	재무과	거창군 청사 증축사업	67	
	경제기업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362	
	안전총괄과	고건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0	
	산림과	7.9~7.19 호우피해재난복구	429	
		석재산업 환경피해저감사업	399	

-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변경하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212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16개, 초과 달성이 21개로, 목표달성도가 82.6%로 지난해 77.4%보다 5.2% 증가되었음.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성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기 바람.

Ⅲ 질의 및 답변 : 생략

Ⅳ 토론요지 : 해당없음

Ⅴ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I 종합평가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20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지적 요구하였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자리였음.
- 위원님들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주요 내용은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전략
 - 경남도민체전 4개군 공동 유치 총력
 -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 거창형 의료타운 예타 통과 및 정상 추진

- 주민이 공감하는 화장시설 건립
- 전문관 제도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 승강기 제2 시험타워 및 도시브랜딩 사업 정상화
- 연극예술 복합단지 도비 확보
- 치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부서 협업 강화
- 군민안전보험 수급사례 홍보
- 맨발길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창포원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생태 정원 정체성 강화
- 서흥여객 준공영제 검토
- 대형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적극 시행
- 산지유통센터 거창산 사과 원물 확보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음.

-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지적하였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400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 및 요구하였음.

Ⅱ 감사실시 경과

- 감사기간 : 2025. 6. 12. ~ 6. 20. (9일간)
- 감사장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
- 감사시행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비 고
이홍희 의원	신재화 의원	신중양 의원 신미정 의원 김향란 의원 최준규 의원 김홍섭 의원 표주숙 의원, 박수자 의원 김혜숙 의원	최영미	고 영 운 정 현 정 전 형 성

* 배 석 : 전문위원(박혜진, 전병준), 정책지원관(정현주, 박홍선, 백수연)

- 감사범위 : 2024. 5. 1. ~ 2025. 4. 30.

* 군정업무 전반,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을 감안 지난 연도 업무 소급감사

- 감사대상 : 전 국·담당관·과·소 · 읍·면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Ⅲ 감사결과

-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 **202건**
- ※ 신분상·재정상 조치 요구사항 : 없음

Ⅳ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 조속한 처리

○ 부서별 시정·지적사항 현황 : **202건**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계	202	안전총괄과	10
		산 림 과	8
기획예산담당관	10	환 경 과	10
전략담당관	9	건설교통과	15
행 정 국	25	도시건축과	9
행정과	7	농 업 기 술 센 터	32
인구교육과	9	농업축산과	12
민원소통과	5	미래농업과	8
재 무 과	4	농업소득과	7
		행복농촌과	5
경 제 복 지 국	42	보 건 소	14
경제기업과	8	보건정책과	7
문화예술과	11	건강증진과	7
관광진흥과	7	수도사업소	7
복지정책과	7	체육시설사업소	7
행복나눔과	9	거창골프장사업소	2
안 전 건 설 국	52	거창사건사업소	2

○ 부서별 시정·지적에 대한 요구내용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기 획 예 산 담 당 관	①지방재정 투자 사업 대응 철저	○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조건부, 재검토,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군정홍보	○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군정 홍보 확대 필요성이 있으 므로 검토바람 ○ 거창9경을 활용한 애국가 영상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 광고제작 시 사진선택 등에 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광고물 게시 후 현장확인을 통해 홍보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 바람 ○ 자매결연 지자체간 상호 광고 홍보사업 확대추진 바람
	③제안제도 운영	○ 제안제도 채택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내 용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제안사업 추진시 제안자 표기 방안 검토할 것. ○ 국민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자 요청시 사전자료 제공 검토
	④2027년 경남 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	○ 도민체전 공동유치 4개군에는 공인된 육상경기장이 없으 므로 개최식·폐회식이 열릴 예정인 거창군에서 육상경기를 진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육상경기장 확보가 필요함. ○ 숙박업, 외식업계와 연계 강화로 도민체전 인프라 확보대 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통합브랜드 관리	○ ‘거창한거창’ 브랜드는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거창한’ 은 농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해서 관리되도록 조치바람
	⑥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이 발굴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사업발굴 방안 마련할 것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청렴도 제고	○ 간부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간부공무원 대상 윤리교육 강화 검토
	⑧위원회 관리	○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위원의 중복선임 횟수도 줄일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⑨예산편성 철저	○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검토 철저
	⑩한마당축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WBS 원음방송 FM라디오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 유치로 미개최되는 바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므로 개최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략담당관	①드론스포츠	○ 드론 축구장 조성방안 검토 ○ 드론축구대회는 ON봄 축제보다 청소년 관련 축제 시 개최하는 방안 검토 ○ 드론스포츠 인재양성에 있어 외부 인재유입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드론체험시 실질적 기기조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정부의 드론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개발로 드론관련 산업이 거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②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학교 동문회를 통한 홍보 시 효과가 높으므로 집중 홍보바람 ○ 특정사업 기부에 있어 사업명을 호응도를 감안하여 작명토록 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함 ○ 장기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고액기부자에 대해 명예의 전당 게시 검토 바람. 기부금 적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호응도 유발 검토
	③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 인재개발원 유치와 관련하여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농가형 계절근로자 관리	○ 농가인력 지원 후 숙박시설 변경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등 수시 점검 강화 ○ 농가형 계절 근로자 유치 시 결혼이민자 가족 활용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⑤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 미협외 토지 문제의 빠른 해결과 예비타당성 통과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유희공간 활용	○ 유희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유희공간 활용에 있어 군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개설 검토 ○ 거창읍 군부대 활용방안으로 국방부 사업과 연계를 모색하기 바람
	⑦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 대응 철저	○ 거창012케어를 통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⑧법조타운 조성관련	○ 구치소를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 ○ 구치소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홍보하기 바람
	⑨화장시설 건립	○ 화장시설 건립 인센티브 지원이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행 정 과	①공무원 인사 관련	○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감악산 아스타국화, 거창창포원 국화, 거창사건 국화재배와 관련하여 전문관 제도 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 전문관에 대한 수당인상도 검토하기 바람 ○ 방문자가 늘어나는 창포원, 감악산 담당부서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관 지정 검토 ○ 읍·면 배치 간호직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 출산축하포인트 지원에 둘째자녀부터 지원 최대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사기양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직장 내 부적응으로 인해 퇴사하는 저연차 공무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 직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에 저연차 공무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
	③자치경찰 사무 추진	○ 거창창포원에 방법순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자치경찰 사업에 청소년 도박중독,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비중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④이장 선출 관련	○ 마을 표준규약 확대 보급토록 하고 이장선출에 따른 갈등이 심한 경우 갈등해결을 위해 행정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나이제한, 근무기간, 연임규정 등 정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⑤국외 자매결 연 사업 활성 화	○ 국외 자매결연 단체와는 교류사업이 미진하므로 공무원 교류, 농산물 교류, 문화교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⑥주 민 자 치 회 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인구가 많은 읍지역은 예산 확대 지원 검토 ○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율 제고, 행정과의 유기적 협조 등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로 취미활동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⑦국 가 기 념 일 행사 추 진	○ 삼일절,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 행사에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의 참석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인 구 교 육 과	①인구증가 시책 추진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관내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바람 ○ 혼인신고 시 전입여부 확인으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이 미혼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혼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입양정책 다각적으로 검토바람 ○ 청년월세, 전세자금 지원은 수요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 예산으로 월세지원도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바람
	②한마음 도서관 운영	○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신청권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 복합시설에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수요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 거창초 학생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것 ○ 시설 안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 통행로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할 것
	④거창대학 관련	○ 거창대학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인해 기존 장학금 지원 등 기존 재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⑤글로벌 평생 학습도시 운영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국외 자매 도시간 교육분야 교류, 교환학생,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사업이 지연되었던 만큼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거창대학 라이프 2.0 사업 추진	○ 거창대학 라이프 2.0사업에 거창대학 만학도반이 개설됨에 따라 모집공고 절차 진행중이던 원예학과가 폐과가 되었음, 원예학과가 만학도반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임, 원예학과에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원예학과 재개설 등 거창대학과 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⑧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검정고시에 필요한 학습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강의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바람 ○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쉼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폭력 등 위기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니벨 보급사업 검토바람
	⑨비대면 멘토링사업 추진	○ 비대면 멘토링사업을 통하여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문학 프로그램도 추진하기 바람
민원소통과	①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 원문정보공개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식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②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방안 강구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음식점을 통한 주요관광지 홍보	○ 규모가 큰 음식점을 통해 관내 주요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관련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인상방안 검토 ○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⑤위생교육 추진	○ 위생교육 연극 프로그램 추진 시 관내 극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재무과	①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 물품구매에 있어 계획단계에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계획이 반영되고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이 평가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 ○ 지역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②공유재산 관리	○ 홍덕에스티시 사옥이 비어 있으므로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람
	③거창경찰서 이전 추진	○ 경찰서 이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④청사관리 및 청사 내 주차관리	○ 청사외벽 구조물 낙하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용차량에 대하여 외부월주차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 ○ 군청주변 주차빌딩 조성 검토 ○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후 출입구 기기작동 미숙으로 인해 정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경 제 기 업 과	①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시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전기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시장나들이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행사와 체험거리 확대방안 검토
	②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 거창군이 지리적으로 물류센터 적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 관련 물류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③산업·농공단 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통근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일반산업단지 농어촌버스 운행횟수 증가 검토바람
	④승강기 제2시험타워 추진 철저	○ 승강기 제2시험타워가 건축도중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므로 철근부식이나 균열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 시공 경험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조속한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승강기 제2시험타워 도시브랜딩 사업이 제2시험타워 준공에 맞춰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⑤거창사랑상품 권 운영	○ 거창사랑상품권 확대방안 검토
	⑥승강기산 업복합관 운영	○ 기숙사 증축 검토
	⑦신장수~무 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	○ 송전선로에서 우리군이 배제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인근 지자체 연대, 국립공원 연대 등 차질없이 대응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⑧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가 미개최되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문화예술포	①거창연극복합단지 조성	○ 국비 미확보시 전면 재검토 바람 ○ 기투자로 미추진 시 예산낭비 우려되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 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 군비예산으로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 검토
	②거창국제연극제 추진	○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의 연극제 참여 및 방문횟수를 늘려 최대한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개·폐막식 무대로 1,000석 규모의 공연장 조성계획인 바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연극제 국제화 전략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연계방안 검토
	③거창한마당 대축제 추진	○ 거창한마당 대축제 행사 시 탄소중립 친환경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향토음식점 메뉴의 읍면별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읍면별 특색있는 메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지난해 플라잉보드 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므로 계속 추진하기 바람 색다른 기획 프로그램 추가 검토 바람 ○ 청년존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거리 퍼레이드 시 다문화가족 퍼레이드 확대 검토 ○ 강변쪽 외부상인 영업허용을 검토하고 주변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 ○ 청년존에 특정업체가 맥주판매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청년 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 바람.
	④아트갤러리 건립	○ 아트갤러리 건축이 설계단계에서 용도별 공간이 기획되고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⑤극단동아리 육성	○ 극단 동아리 육성에 구성원과 주소 등이 같은 단체가 대표자만 달리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현황 파악하고 연극관련 타 예산 지원과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조치 바람직하며 신규동아리 극단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⑥예술가족 운영	○ 예술가족 1인이 발급할 수 있는 공연티켓 4장에 대하여 감면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 발권 시 가족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가족 대리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⑦거창박물관 운영	○ 박물관에 연안이씨 종중문적과 가치 있는 보물이 신규 확보 되었으므로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전시 검토 바람.
	⑧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무대 및 무대비가림 시설 설치 검토하고 유튜버를 통해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⑨영화관 지원방안 강구	○ 롯데시네마 관련 지원예산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영화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⑩상상생활문화센터	○ 화장실 대책 및 경사로 정비 필요하며 행사 홍보에 유튜버 활용방안 검토 바람.
	⑪명상·비건 축제	○ 소음문제, 장소문제 등 행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함.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관 광 진 흥 과	①창포원 야간조명 설치	○ 창포원 야간조명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예술성과 창포원만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어 추후 시설 보강이 필요해 보임. ○ 야간조명 시설 운영 시 생태를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치유산업 서비스 확산	○ 치유농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치유농업 운영에 연계가 필요한 교육기관이나 구치소, 보건소 등과 매개 역할을 행정에서 추진하기 바람.
	③관광 정책 관련	○ 거창군의 강점인 월성계곡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 정책 개발을 검토 바람. ○ 창포원 등 주요 관광지에 거창군 홍보용 음악을 비롯하여 관광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청취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거창홍보를 위해 굿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관광안내책자에 가조온천 족욕장, 백두산 온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식 가능 식당도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④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 체험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체험비도 높아 경쟁력이 없으므로 대책을 검토 바람
	⑤ON봄 축제 관련	○ 청소년들 공연 우천시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으므로 조치 바람. ○ 통합개회식 후 개별축제별 개회식은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산양삼축제 관광객 참여방안으로, 경매, 체험, 채취, 치유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⑥수승대 국민	○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에 수승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관광지 운영	○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시 수승대를 잘 반영하고 야행관광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작명토록 하고 수승대의 문화적 자원과 연계된 조형물, 콘텐츠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무병장수길 트레킹코스 풀베기 등 관리 철저 ○ 수승대 내 안내선 및 스톱퍼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형광색 도색 조치 바람.
	⑦옛88고속도로 폐도 활용 관광자원화	○ 사업추진 시 주민소득 증대방안 마련해서 추진할 것. ○ 가조권 관광지와 연계되어 가조내에서 종합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복지정책과	①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 중장년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사업에 기계사용법 안내와 작동오류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고독사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동절기나 환절기 시 경로당에서 함께 취침이 이루어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②읍면별 공유냉장고 추진	○ 읍면 간 물품현황 공유 검토 ○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③군민대상 사업 홍보 철저	○ 군민대상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홍보방안 마련으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군민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④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확대	○ 대단위 공동주택에도 우선주차구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측과 협의하기 바람.
	⑤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 유허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사들과 협조공문 등을 통한 협업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⑥종합사회복	○ 유희공간 정비 시 자원봉사센터 적치물이 많으므로 창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지센터 운영	확보하여 정리하기 바라며 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⑦자원봉사 운영	○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운영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율적인 봉사를 늘려갈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행 복 나 눔 과	①군수공약 사업 추진	○ 고령 친화도시나 아동 친화도시 지정에 앞서 보행환경 개선이나 복지시설 확보 등 친화도시로서의 여건 조성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공설공원묘지 운영	○ 유족이 거창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방안 검토 바람. ○ 주말·공휴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③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열악하므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거창시니어카운티 운영	○ 특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거창시니어 카운티만의 장점들이 많으므로 입소자 모집이나 요양보호사 확보 시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절차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것
	⑤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약자 대상이므로 안전사고 발생 대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장난감은행 운영	○ QR코드 및 인터넷 활용으로 구비 장난감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장난감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창구마련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토.
	⑦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 확대	○ 식사도우미사업이 전 경로당에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⑧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관련	○ 생활지원사 후생복지 확대 검토 바람
	⑨드림스타 트 사업 추진	○ 드림스타트 근무직원 공무원 전환 방안 강구 검토
안 전 총 괄 과	①재해 예방 관리	○ 도로 등 각종 공사 시 차량 통행에 대한 교통지도도 없이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 통행 안전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등 지정구역 외에도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③120자원봉 사대 사랑의 집짓기 관련	○ 사랑의 집짓기 읍면별 형평성 고려하여 추진 바람. ○ 사랑의 집짓기 재료비 상향 검토 ○ 사랑의 집 선정 시 명확한 기준 적용 및 투명성 확보.
	④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 고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⑤농촌형 소화전 관리	○ 농촌형 소화전 사용법에 대하여 일반주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⑥스마트 마을방송 운영	○ 스마트 마을방송 전화 및 문자횟수가 너무 많고 받지 않으면 계속 걸려오는 등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신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 가입을 제고를 위해 이장을 통해 미가입자 명단에 본인 서명을 받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 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공사 안내, 선거 독려 등을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본인 동의없이 가입되는 사례는 없도록 점검 바람.
	⑦실종자 수색작업 관련	○ 실종자 수색작업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바 주민들이 수색작업 투입 시에 보상대책 강구
	⑧군민안전보험 추진	○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전기톱이 농기계로 지정되어 전기톱으로 인한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 군민 안전보험 보상받은 실적에 대하여 홍보 필요
	⑨재난 대비	○ 구호물품 저장소, 비상시 대피장소 등의 안내가 부족하므로 스마트폰 안전앱을 활용한 안전관련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폭염시 주의사항 등 재난 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바람.
	⑩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근무자 윤리교육 강화 ○ 1일점검시스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산 림 과	①산불전문진화대 운영	○ 방염 안전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진화대원 젊은 연령층 확보를 위해 체력평가가 우선되어 선발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②산불 대응	○ 산불진화 임도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대형산불방지 안전공간 예산을 군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가로 안전공간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안전공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 조림사업 시 산주와의 협의를 통해 내화수림대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기 바람. ○ 조림사업 시 임목폐기물 정리할 것 ○ 산불진화용 저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③등산로 조성 및 정비	○ 해발이 높은 산 정비 시 수명이 긴 철골 재질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④산림레포츠파크 운영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정상화, 숲속의집 숙박동 추가 확보, 카페, 식당 등 주변 먹거리 확보토록 하고 적은 예산으로 주변 여건을 활용한 시설 추가 조성으로 인근 관광지 방문 관광객 유입방안 마련. ○ 향노화 체험길 시설 점검토록 조치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수탁업체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 요구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애견 관련 시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⑤출렁다리 개방시간 조정	○ 관내 출렁다리 등 단순 관람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공원 관리	○ 죽전 공원 어린이 공원에 탄성포장이 훼손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과 시각적, 위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치바람. ○ 죽전 공원을 비롯한 충혼탑 일대에 어두운 곳이 있으므로 가로등 추가설치 검토. ○ 죽전공원 내 맨발걷기길이 인기가 있으나 동절기 등 사용이 어려우므로 비가림, 햇빛가림, 동절기 사용가능한 비닐 하우스형 구조물 설치 검토 ○ 맨발걷기 활성화 종합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죽전공원 맨발걷기길은 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경사지에 설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문가 검토와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맨발걷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바람. ○ 거열교에서 건계정가는 도로변 공원 내 산책로에 느티나무 식재 검토. ○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맨발걷기 시설이 거창읍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⑦미이용 산림자원화 센터 조성	○ 송희마을 주민과 축사소유주의 반대민원에 대하여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과 주민 설득을 통하여 반대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⑧임도관리	○ 염소축산 등록농가 비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농가가 축사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도포장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오던 임도구간은 농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환경과	①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확충 검토바람.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점검 강화 검토
	②다회용기 및 또쓰컵 사용	○ 또쓰컵 구매시 카페, 세척장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 후에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자활근로센터 다회용기 세척장 확장 및 이전방안 강구 ○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에 컵 부분 확대 검토 바람 ○ 다회용컵 사용식당 참여율 제고방안 검토바람 ○ 세종시 해피해빗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이 있을시 우리군 접목 여부 검토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덕유산 생태탐방원 유치	○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거창군의 경우 유치여건이 열악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④재활용품 처리	○ 하천환경센터와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자원환경관리사 양성 과 군민의식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검토
	⑤재활용품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관리	○ 마을의 재활용품 집하장이 가시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된 경우 내부가 노출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시야차단을 하거나 장소이전을 검토바람. ○ 클린하우스 규모를 마을별 인구수 등을 감안해 규모를 달리하여 설치될 수 있는 방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⑥거창창포원 관리	○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 창포원 먹거리 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므로 편의점 공간 확대방안 마련과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장소에 먹거리 확보를 위한 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져 먹거리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창포원 족욕장 내 족욕시설 확대설치 및 예약제와 방문이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옥외 광고물 설치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조명시설이 과밀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바람
	⑦폐가전, 폐가구 재활용	○ 폐가전, 폐가구 재사용 플랫폼 구축하여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⑧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 온실 시설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바 스마트팜 관련 시설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⑨재활용품 수거자판기	○ 재활용품 수거자판기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던 사업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⑩환경민원 관리	○ 시내 주택가에 페트병, 폐지 등의 적치로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바람. ○ 축사 악취포집기 확대 방안 검토
건설교통과	①아월교 회전교차로 관련	○ 교량쪽 횡단보도 단차 조정 등 미비점 보완하기 바람 ○ 아월교 난간이 높아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전교차로 마무리 공사에 난간공사가 포함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거창IC 관문조성사업 관련	○ 거창IC 관문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톨게이트 조형물, 거창 IC 앞 교통섬 조형물, 만남의 광장 전망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거창의 상징물로 홍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홍보내용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만남의 광장 전망대는 찾는 사람이 없어 보완조치가 필요함
	③준영구 논두렁사업 추진	○ 준영구 논두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검토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바 사업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여 추진여부를 살펴보기 바람 ○ 면별경지정리 면적과 비례하여 사업량이 결정되도록 조치 바람
	④명품 거창위천 조성사업	○ 하천준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본 사업으로 설치된 건계정 산책로 조형물이 당초 기대효과에 미흡하고 분수 등 시설설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성하기 바람.
	⑤옹곡천 생태하천	○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 최소화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정비사업	○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수질개선, 생태계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⑥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	○ 공영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장기적으로 볼 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에 행정의 적극성이 요구됨
	⑦강변 데크 및 쉼터설치	○ 대평리 황정형외과 앞 강변에 쉼터조성 등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⑧주차장 확보	○ 시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빌딩으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개방주차장 발굴 등 추가 확보 노력 바람
	⑨주민편익사업 추진	○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이장 개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을의 현안들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⑩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되어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⑪도로 정비	○ 주상 도평 구도로와의 연결부위 교통위험이 상존하므로 선형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가조면 지역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야간에 시인성이 좋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점검을 통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도로 정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시 사람중심의 교통 인프라로 정책변화 모색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⑫건설기계 주기장 확보	○ 건설기계 주기장이 부족하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검토
	⑬농로포장	○ 농로 확포장 시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가각부 확보 등 농기계 통행이 원활히 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⑮버스 승강장 온열벤치 정비	○ 버스 승강장 온열벤치 운영에 있어 운영시간대 조정, 자동타이머 오작동 점검, 온도 조정 등 개선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검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도 시 건 축 과	①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도로 정비 시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린썬 스테이션에 15개 자전거도로 구간이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그린썬 스테이션에 설치된 안전모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바람
	②도시계획 및 도로 관리	○ 더샵 아파트 준공으로 주변 교통문제가 심각하므로 거열 산성 진입도로가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거창교 재가설사업 시행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 단축, 교통량 분산대책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교량주변 현수막 계점으로 인한 시거장애 해소방안 마련하기 바람 ○ 도로 안전봉이 파손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점검 바람 ○ 아담고 옆 도시계획도로 연결방안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 어린이자전거交通安全교육장이 주위 여건과 어울리는 효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용도 높은 시설로 변경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시내 폭우 시 상습침수구간 해소대책 마련 바람
	③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거창대학 회전교차로 교통섬 미관개선 조치바람 ○ 한들대교 남단 회전교차로 설치가 대형차로 기준으로 조성이 필요한 장소이나 기준 이하로 조성되어 대형버스 통행에 지장이 많아 대행차로 기준으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 차후 교차로 설치사업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회전교차로 사업 시 보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만남의 광장 앞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검토바람. ○ 개봉 회전교차로 경관사업에 소나무 식재, 조명공사 등에 있어 과도한 소나무 식재로 시야 확보가 안 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므로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됨
	④빈집 정비사업 추진	○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 파악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소유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공인중개사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행정에서 소유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람
	⑤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 도비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⑥제2스포츠타운 준공검사 관련	○ 제2스포츠타운 준공식이 준공 전 절차이행이 미비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한들대교 관련	○ 준공 직후 안전도 검사 C등급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준공검사가 되었음, 대형사업임에도 감리없이 직접 시행되어 하자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차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바라며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하자보수에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⑧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관련	○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원도심과 상동택지지구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내 상가의 공실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공개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⑨도시재생 사업 추진	○ 거창군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되는 사업진행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협업토록 하고 상인들의 참여를 통하여 상인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상동 어울림센터와 죽전 거창마을 호텔 등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일부 미흡한 시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농 업 축 산 과	①거창 아리미아꽃 축제	○ 거창아리미아꽃축제, 읍면꽃길가꾸기 사업 등이 계절별 맞춤재배를 통하여 지역화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거창아리미아꽃축제는 주제형 전시관을 통해 작품을 전시하는 등 내용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축제인데 온봄 축제와 통합으로 예산이 줄어 작품 전시가 줄었음, 성장 가능성이 많은 거창아리미아꽃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 검토 바람. ○ 거창아리미아꽃 축제장 악취 방지 방안 마련할 것.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농업인 월급제 운영	○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③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 공동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면 식당을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으므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현실에 맞게 지원액 상향 검토 바람
	④반려동물 지원센터	○ 펫월드는 적자 운영되는 곳이 많으므로 방문객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적절한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 조사료 생산농가에는 종자대만 지원되고 지원액도 부족하므로 증액을 검토바람.
	⑥양봉산업 지원	○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이 적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자재, 약제 등에 대한 신청 가능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약품을 농가가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양봉산업 협회지원이 아닌 농가직접 지원 추진 바람. ○ 밀원수 확대 조성방안 검토바람
	⑦농사청 운영	○ 여성농민 대상 정책 홍보, 의견수렴 등 여성농민과 소통될 수 있도록 여성농민 대상의 농사청 운영도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⑧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잔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⑨청년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청년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4-H복원이 필요하고 4-h 학생 회원에 대한 농업정보지 지원 확대 검토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등 지원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⑩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 녹색곳간 향토음식관 메뉴 다양화 검토할 것 ○ 한마당 축제는 지역축제 성격이 강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시 농산물판매소를 창포원에 설치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⑪치유농업 관련	○ 치유산업 특구 사업에 산림치유, 농촌치유, 치유관광이 있고 농촌치유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⑫승마산업 육성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인 체험 지원 등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미래 농업 과	①푸드종합 센터 운영	○ 생산자의 소득 증대 및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생산자 그룹 관리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그룹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푸드종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의지와 운영 철학이 중요한 바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마리음식 거리 조성	○ 마리음식거리 입간판 설치사업이 입간판 디자인과 위치, 시인성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검하시기 바람. ○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밀한 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마리음식거리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은 창포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창포원 관광 인프라 확보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 교육관, 레스토랑 연계해서 웨딩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람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후 유기농과 거창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네이밍이 필요하고 감성과 치유를 특화한 차별화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 마련하기 바람.
	④3무농업 관련	○ 3무농업 참여농가 확대방안 마련, 3무농업 사과의 차별성 홍보 및 판매망 확보 등 시장개척 방안 마련
	⑤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양계농가 사용실적이 미진하므로 사용실적을 늘려 악취 등 민원발생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⑥G-애플 운영	○ G-애플 재위탁 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세수 확보와 운영 자율성 확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G-애플 반려애견공간에 비가림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이 보완되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천적생태과학관 운영	○ 나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할 것
	⑧스마트농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신품종개발, 재배기술 개발, 저장기술 개발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일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람. ○ 농업인들에게 날씨 정보나 스마트 농업 관련 정보를 청년 농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농 업 소 득 과	①거점APC 운영	○ 거창APC 수탁자 공개모집 시 매출실적, 운영경험, 종사자 수 평가에서 수탁자로 선정된 열매나무보다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있었지만 우리 군 지역사회 공헌도, 농산물 판매실적 가점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지역업체인 열매나무가 선정된 것은 전국단위 공모를 주문한 취지에 맞지 않고 거창사과 제값받기, APC 활성화에 대한 사과농민의 절실함에 비춰 아쉽게 추진된 바 당초에 목표되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APC 운영 위탁 체결 시 협약서에 명기된 가격, 선별, 처리용량, 처리기간 등의 항목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거창사과 수출방안 마련 추진하기 바람. ○ 거창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생산된 거창사과가 거창사과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거창사과 상위 10% 고품질 사과를 대상으로 안동공판장 가격으로 매입하여 브랜드 사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거창 관문 등에 거창사과 판매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 APC 납품량을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행정위주의 안일한 조치로 보이는 바 다각적인 공선농가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과수산업 관련	○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비 미교부를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어 다축과원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바 계획된 과원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바람. ○ 정부의 사과 관련 정책동향을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철저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시설원에 수정별 지원	○ 시설원에 수정별 지원 후 수정별통이 버려져 영농폐기 물로 쌓이고 있으므로 회수 및 소각 지원방안 검토 바람.
	④고품질쌀 생산	○ 공동육묘장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모판 가격을 파악 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농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바 람. ○ 찰벼 등 정부보급종 공급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바 람
	⑤농기계 사고예방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모아 안전교 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⑥저온저장 고 지원사업	○ 사과, 포도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없으나 농가에서는 필요한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지원 검토바람.
	⑦농특산식 품 수출	○ 해외신시장 개척사업에 수출실적이 없지만 잠재성장 가능 성이 있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신시장개척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행 복 농 촌 과	①청년경영 실습농장 운영	○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기간이 종료된 청년농 등 청년 농이 창농을 하려고 하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의 경우 선진 사례로 우수 활동사항 등을 홍보를 통해 청년농 유입에 활용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농촌체험 휴양마을	○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 개선 지원사업확대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바람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효과가 높은 사업임.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테마관광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모사업 안에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 사업추진 방안 마련도 검토가 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이며 알차게 계획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역주민 참여 미흡 등 대부분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으므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 스포츠 전지훈련 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용이 늘고 있으나 체험용으로 지어져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소액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은 우선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③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	○ 귀농·귀촌 보조사업 관련하여 전입 후 몇 년까지 대상인지,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귀농귀촌 업무는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 보이며 귀농귀촌인으로 인한 갈등 해결, 다양한 민원 해결 등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인력확보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④농촌협약 공모사업	○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시설 활용방안과 운영방안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공모가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⑤중간지원 조직 운영	○ 중간지원조직 인력풀을 이용한 인력활용 방안을 확대하고 중간지원통합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보건 정책 과	①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 야간응급실 운영에 있어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있으므로 서비스 개선방안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야간진료 시 한국병원의 야간진료에 대한 안내 철저히 일반환자의 경우 한국병원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만 적십자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야간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야간응급실 운영에 있어 중증, 경증환자 기준도 안내하기 바람. ○ 보험상품 중 야간에 응급실 방문 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었음,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야간 이용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그 수요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한국병원으로 외래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기 바람
	②달빛어린이 병원 관련	○ 중앙메디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시 홍보토록 하고 현판을 부착하여 행인을 통해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달빛 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바람
	③마약류 관리	○ 대마재배 농가관리가 허술하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의료장비 구입	○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재활 장비 구입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	○ 면지역 방역소독이 구석지고 길이 협소하거나 외딴곳에는 방역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짐없이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감염병 관련 안내문자 서비스 검토
	⑥병·의원	○ 의료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병의원에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관리	대한 행정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공중보건 의 운영	○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퇴직한 시니어 의사 확보방 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건 강 증 진 과	①적십자 병원 분만실 운영	○ 산전 진료가 분만으로 이어지므로 거창적십자병원 산부 인과 진료 산모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②산후조리원 비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이 사회보장미협의로 인해 추진이 어려 우나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창포원 맨발걷기 행사	○ 창포원 맨발걷기 행사 시 마사토길, 황토길을 함께 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거창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걷기 행사도 창포원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별이 빛나는 체조 운영은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 확대추진 검토바람
	⑤암환자 관리	○ 암환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가 되어 누 락되는 부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금연관리	○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조례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 검토바람
	⑦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직접수행 시 예산절감과 신속한 결과확인 등 장점이 있고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업추진 검토바람
수 도 사 업 소	①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등 오염물 환경정비 바람.
	②약수터 관리	○ 건계정등산로 약수터 수질관리가 안 되어 사용불가인 기간이 있었는데 수선 등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어 주민 민원을 초래하였으므로 차후 유사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③정수장 관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규정에 맞게 인력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확보 노력 바람.
	④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관리	○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혼용 마을에 대해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마을상수도 사용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관정을 사용하는 곳 중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능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웅양 지방상수도 취수원을 웅양저수지로 변경 검토하라는 2024년 행감 지적에 대해 취수원 변경불가라는 조치결과 답변이 있었으나 변경불가 사유가 부적절해 보이므로 재추진 검토 바람.
	⑤상·하수도 요금 인상	○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5년간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올해 체납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하수도 준설	○ 하수도 관로에 당배뽕초 등 오염물질이 쌓여 있으므로 준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땅꺼짐 현상 대비	○ 상하수도 공사 시 땅꺼짐 현상발생, 시내지역 지반조사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체 육 시 설 사 업 소	①도민체전 참가	○ 도민체전참가 여비, 교통비 등이 행사가 끝난 뒤 누장지 급된 바 체육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제2스포츠타운 관련	○ 제2스포츠타운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고정식 안전패드 등이 설치되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외야에 돌을 쌓는 조경으로 마감되어 위험요인이 있는데도 준공이 되는 등 스포츠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바람. ○ 제2스포츠타운 야구장 배수시설, 기록실, 구장내 베이스, 관중석 비가림 시설, 비디오판독 시설 설치 등 시설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다목적구장 등 전반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필요하므로 점검 후 조치바람
	③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배수 및 잔디 생장에 문제없도록 점검바람
	④국민체육 센터 관리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전국 공고를 주문했으나 지역공고로 추진된 부분은 시정이 요구됨 ○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추진하고 촌지 문화 점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⑤스포츠 마케팅	○ 거창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라 도단위 이상 대회와 2일이상 체류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유소년 축구팀, 대학축구팀 창설 검토바람 ○ 합천군과 고성군 등 스포츠마케팅 실적이 우수한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조기 준공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 노력 바람
	⑥스포츠파 크 운영	○ 스포츠파크 실외골프연습장 시설을 개선하여 타석을 늘려 운영함으로써 사설업체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업체와 소통하는 등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사설업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⑦운동기구 관리	○ 야외 운동기구가 연중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거 창 골 프 장 사 업 소	①거창CC 안전관리	○ 캐디가 없어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거창CC 예약시스템 관리	○ 골프장 예약시스템 서버 애러 해소 및 매크로 예약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거 창 사 건 사 업 소	①거창사건 보상법 제정	○ 거창사건 보상법안 제정과 관련한 정치국면이 호기로 보 이는 바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팬발건기 길 운영	○ 팬발건기 세죽장에 비누 등 세정제를 비치하여 위생관 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5. 30.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
위원회(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집행부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 심사의 절차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안건 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대상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분리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제3항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략) <신 설>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처분 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u>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u> 하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재산관리관으로 보고, <u>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한다.</u>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1건)이므로 관리계획에 있는 각 재산 건별로 각각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1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분리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심사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한 개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 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1
2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의 원 발 의)	6
3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1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략 담 당 관	15
5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 략 담 당 관	19
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행 정 과	27
7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 정 과	30
8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소 통 과	33
9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39
10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43
1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48
1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52
1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복 나 눔 과	57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62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5. 30.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도록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가 결합된 개념으로, 정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이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전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인류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이면에는 이로 인한 허위조작 정보, 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교육 현장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논의되고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현실임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싱가포르 등 아시아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과 과정에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내 동아리,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읽고, 경험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취지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따른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5. 30.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2)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안 제5조)
- 5) 위원회 심의(안 제6조)

-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 제7조)
- 7)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1부.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계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법령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
- 2)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 이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근거가 명확함.
- 두 위원회의 역할을 보더라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수입·세출예산의 운용 상황 전반과 재무제표, 기금운용 현황 등 예산서와 결산서의 적정성을 모두 심의하므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심의하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진다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

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제5항 중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로 이어진 관계를 생활인구 확대에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부자 예우 사항 확대 등을 정함(안 제17조)
 - 가)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 나)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2) 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부증서 발급과 기부자 감면 혜택을 신설 하고 법 개정 사항 및 조문 현행화를 목적으로 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의 품목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u>제4조</u>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조문 현행화
제7조 제3호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u>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서</u> 또는 외국인등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시행령과 일치
제8조	• 기부금의 사용목적	• <u>삭제</u>	
제17조	• 기부자 예우 • (제1항)	• 기부자 예우 • (제1항)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 발급	추가
	• (신설)	• (제3호)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제3호)	• (제4호)	호변경

- 개정안 제7조제3호와 제8조제1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음.

- 개정안 제17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 발급
-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 다만, 기부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 기부 유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부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유지를 하고 기부금이 사용된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기부자의 이름을 특정 프로젝트에 명명하거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은 기부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해 더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제7조제3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을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예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자 예우”를 “기부자예우”로 한다.

3.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 제안이유

-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설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정함(안 제3조~제8조)
가) 존속기한,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관계 공무원
- 2)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지원계획, 주민지원사업 신청, 주민지원협의체를 정함(안 제9조~제12조)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 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변지역, 유치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 화장시설은 필수적인 공익시설임에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적·지역 간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조성 재원확보를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 사업의 해결이 필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제2의 갈등으로 기금지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협의체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형식에 맞도록 공포일자를 정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오가·용동·월포·남불·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나. 주민공동사업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
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는 호응 부족으로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거나 거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 거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게

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었음.

- 혜택으로는 수승대 관람료 면제, 농·축·특산물 직거래 알선, 지역소식, 공연, 축제, 농산물 특판행사와 같은 소식 정보 제공 정도로 실제 흡인력이 약하다고 판단됨.
- 거창군은 2023년 5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사실상 2012년 이후부터 운영을 중단한 사업이므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는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신설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친절 거창운동, 아림1004운동 추진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13년이 지난 현재 아림1004운동은 거창군만의 복지안전망으로 이미 안착하였고, 그동안 군민의 기초 질서에 대한 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다고 보여짐
- 또한, 2019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없으며, 각종 캠페인과 관련 단체의 계도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조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 12. 3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
- 2) 선정대리인 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9조)
 - 가)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

-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 3)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이관함(안 부칙 제2조)
 - 1) 현행: 재무과 소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근거
 - 2) 변경: 민원소통과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4.12.31.)으로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의 제1항 제5호에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조를 정비하고 안 제17조~제19조를 신설하였음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소유재산의 가

액의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를 신설하였음.

- 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운영 방법에 대해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중 “공휴일·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18조(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實費) 보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함(안 제3조)
 - 가) 현행: 연임제한 없음
 - 나) 변경: 세 차례만 연임 가능
- 2)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21조)
 - 가)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특별지원 대상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는 연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특정 인물에게만 기회가 집중될 우려가 있었음.
- 새로운 인재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숙박, 음식, 체험 활동 등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신달자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신달자문학관의 설치근거, 명칭 등을 정함(안 제2조)
- 2) 문학관의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3)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제한 등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4)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을 정함(안 제8조)
- 5) 이용 신청, 이용의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6)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별표 1·2)
- 7) 이용자의 설비,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제정안은 거창군 신달자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문화사업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학관 운영은 문화적 자산 형성, 관광 산업 발전,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 지역 이미지 홍보, 지역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으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재정 지원,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
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
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신청 등) 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활동하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창군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을 신설함(안 별표)
- 2) 사무의 위탁을 정비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조례 개정안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5년 신규·

특수 시책인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체류공간 조성」 사업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제2항 별표의 내용 중 지원분야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세부사업 내용에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
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사무의 위탁)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
인·단체”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함.
- 예술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들은
공연을 관람하거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예술가들이 머무는 동안 숙박, 식사,
재료 구매 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면 단순한 창작 공간으로만
머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임
- 관료주의적 절차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민간위
탁의 범위를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한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의 세부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u>○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 설></u>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 ○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그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센터

2)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별표 2·3, 삭제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상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였음.
- 이 밖에 별표2(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과 별표3(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따른 법적 인력기준(1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근 4회 연속 최하 등급(F)을 받아 왔고,
- 거창군은 현재 삶의 쉼터, 노인복지회관,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폭 늘어났으며, 기능 또한 문화교실,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이동복지관 등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3조 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은”을 “복지센터는”으로 각각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

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8조)제4항 중 “복지관”을 “복지센터”로 “일부 및”을 “일부나”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로 하고 시설구분란 제2호 중 “소강당”을 “프로그램실, 소회의실”로 하며 비고란 중 “토·일요일,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등의 반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 이용이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 이후 유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공설장사시설로 용어 등 정비함(안 제명, 제1조~제7조, 별표 1~3)
(현행) 공설공원묘지
(변경) 공설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포괄하는 법적 용어
- 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처리방법을 구체화함(안 제6조)
- 3)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에 대한 유골 및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봉안시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024.12.3.)에 따른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자연장지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공설 봉안시설 사용기간 및 제한을 전국 평균에 맞춰 30년으로 정하고, 연장 신청 시 5년~30년 이하의 범위로 한 차례만 연장가능 하도록 규정하였고,
- 자연장지 설치 규정을 명시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자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자연장, 산분장이 바람직하므로 인식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자연장, 산분장보다 봉안당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음

<봉안시설 설치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 천구)

구 분	개소수			봉안시설 안치 현황(천구)			잔여율 (%)
	봉안당	봉안묘·탑·담	합계	봉안능력	기 봉안	잔여분	
합 계	448	163	611	6,550	2,486	4,064	62.0
공 설	146	52	198	2,044	1,349	695	34.0
사 설	소계	302	111	413	4,506	1,137	74.8
	법인	83	55	138	3,087	745	75.9
	종교	219	56	275	1,419	392	72.4

※ 개인.종중.문중 시설 제외

- 또한, 계약종료 후 자체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종료에 따른 유골 처리방식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 제목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공원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설공원묘지를”을 “공설장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제11호를 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을 “공설장사시설을”로 “공설공원묘지와”를 “공설장사시설과”로 한다.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 제목 “(분묘의 형태 등)”을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묘”를 “분묘 및 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제목 중 “공설공원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5.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①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서비스 기능시설 조성 및 사회단체 및 공동체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사업내용 : 가조 거점센터 신축 A=637.5m²
- 사 업 비 : 4,000백만원(균 2,800, 도 360, 군 840)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시기	사유	비고
		소 재 지	면적(m²)				
총 계				3,444,000			
취득	건축물	가조면 수월리 453	637.5	3,444,000	2025 ~ 2027	가조 거점센터 조성	신축

※ ¹⁾기준가격 적용 : 공사비(4,630천원/m²) + 설계·감리 등 부대비(492,000천원)

다. 추진경과

-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023. 6. ~ 2024. 8.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24. 8. :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4. 8. ~ 11. :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 2025. 2.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라. 향후계획

- 2025. 5. : 설계공모 심사
- 2025. 6. ~ 2025. 11. : 실시설계 추진
- 2025. 12.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생활기반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성 및 생활공간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상승
- 문화·복지·체육·휴게를 즐길 수 있는 중심 거점지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바. 담당부서 검토

시 설 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가조 거점센터 (가조면 수월리 453)	신축	▶ 가조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현재 거창군 소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 조성하여 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휴게 활동 공간 제공하고자 함 ⇒ 기존 주차장 시설 철거 후 거점센터 신축 반영	

3.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4.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5. 관련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가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 2022년 6월, 2023년 농촌협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조면 거점 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2024년 8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 하고, 거창군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음.
- 가조면 거점센터 신축은 2층규모, 연면적 637m²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 1층에는 공유부엌, 공유세탁실, 다목적 홀을 배치하고, 2층에는 헬스장과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중심지 기능을 보완할 계획으로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건물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던 사업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주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와 소득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애우 배넷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6
3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17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7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8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9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라.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거창군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나. 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6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 ~제8조)
- 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9조)
-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안 제10조 ~제20조)
- 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제안(안 제21조~제22조)
- 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23조)
- 아. 전담부서 설치(안 제24조)
- 자. 추진협업체 및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25조~제26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2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4. 16. ~ 2025. 04.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에 대비할 수 있고, “통합”형 조례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제1조 목적을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 공공디자인과 함께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제8조에 공고 시나 공청회 시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제21조제1항제3호에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경상남도 조례의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연계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
- 또한 별표1을 통하여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공사비 3억원 이상은 심의를,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자문을, 공사비 1억원 미만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과 협의의 차이점,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규정마련이 필요해 보임.
-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2개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라.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대금 상환 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채무 이행불능 상태 농가 발생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애우 배넛소 대부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5. 13. ~ 05.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폐지조례안은 영세농가와 귀농, 다문화가정 등에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대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4월 4일 제정되었던 조례안임.
- 시행과정에서 대금 상환 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 가중, 채무 이행불능상태 농가 발생, 고능력 송아지를 지원하였으나 저능력 송아지가 회수됨에 따른 자금 손실 지속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이후 중단된 사업으로 체납자에 대한 분할 상환까지 완료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배넛소 대부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박수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라.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수자 의원)

-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안 제5조)
- 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미래농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5. 09. ~ 05.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스마트농업은 종자개발, 생산, 관리,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전반에서 IoT, 로봇, 드론, 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노동력과 자원을 최적화하여 수확량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련의 농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병충해 피해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 유입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거창군도 2023년 12월 27일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효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제2조에서 농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스마트농업, 스마트 농업데이터, 스마트팜을 정의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스마트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방안,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스마트 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방안 계획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음.
- 스마트농업은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어 농작업 시 수집되는 정보가 중요하기에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계획 수립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청년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신설하는 것은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 안 제11조에 거창군에 조성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조성 예정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조성·운영과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청년 스마트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당장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5. 30.

나. 발 의 자 :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5. 30.

라.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 거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신설(안제8조제2항제11호)

나. 경비 지원대상의 신설(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 「스포츠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체육시설사업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참고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8조제2항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체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과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신설

하여 선수발굴 및 육성, 재능기부 활성화, 대회유치 및 개최,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신설된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의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원분야에서 추진할 수는 있는 사업으로 보이나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5. 30.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5. 30.
- 다.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화재폐기물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원 대상·기준·제외·신청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2) 소실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3) 빈집, 중복지원 등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5. 9.~5.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 발생 시 화재사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규정이 없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재난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라는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화재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여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돕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제4조 지원 대상을 보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음.
- 제5조 지원내용에는 화재폐기물 지원을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제6조에는 중복지원 제외 등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 내 화재폐기물에 한정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으로 거창군 지원금액과 같이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음.
- 경상남도 내 주택화재 시 화재폐기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산청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 의령군과 창녕군의 경우 피해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로 제정안이 상정되어 주택화재 시 폐기물 처리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음. 조례명을 거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하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비롯하여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심리회복 지원 등 화재 피해 시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화재 시 임시거처 지원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 금융 등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 한정된 군민만 혜택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본 제정조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시거처 지원을 조례에 담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아림1004운동 지원을 살펴보면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기초하여 주택화재가구에 대하여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아림1004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타 지원여부 상관없이 위로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도간 연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심리회복 지원의 경우 재해현장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증진과의 재난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주택화재 시 전반적인 지원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화재 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 지원이 꼭 필요하고 화재 발생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급해 보임.
- 조례가 제정된다면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심리회복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5. 30.
다.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처리 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내용 신설함(안 제2조·제3조·제7조)
1) 정의, 군수의 책무
2) 배출 및 처리 방법
나. 용어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8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5·제15조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2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4. 29.~5.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처리기준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2조제1호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기재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로 개정하였음. 제2조제5호 대행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제12조에 대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내용 신설은 법제14조의4에 규정된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제3조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제7조 제7항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공고하고 환경달력을 만들어 배포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단서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안전기준의 적용예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2조의2에 그 적용예외 사항을 정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와 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면 폐농약, 폐형광등, 폐페인트, 소형 전자 기기, 생활화학제품(폐광택제, 폐접착제, 세정제, 세척용품) 등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5. 30.

다.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에 맞게 교육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1) 대상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 종사자

- 2) 내용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3)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합동평가대상
- 나. 예산조치 :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의 교육 일괄 시행에 따라 예산 불필요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5. 23.~5.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필수조례 참고 조례안 반영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법령에서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할 교육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에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교육 내용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법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는 사항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개정되는 내용들은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들로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제 때 정비되지 못할 경우 조례의 효력 다툼이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이는 바 특별히 조례로 위임하여 재기재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5. 30.
다.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명, 별표)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비용을 신설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도로교통법」 제2조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5. 15.~5.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여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제명을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서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차에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자동차를 차로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별표 견인비용 대상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를 20,000원으로 규정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차가 주차위반 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소요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5. 5. 30.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5. 30.
- 다. 상정일자 :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거창군 농업인의 분석실 이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 농업인에게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함(안 제9조)
 - 1) 현행 무료범위 :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 2) 추가 : 농산물 잔류농약
 - 3) 예외 징수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54조·제15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3. 11.~3.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게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종합분석실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과학적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토양에 부족한 성분을 파악해 균형 있는 시비를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에 공급하는 수질을 관리해 작물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며,
- 농작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분석실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임.
- 기존 조례에서는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의

분석수수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 대하여 분석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수수료에 대한 농민 부담을 없앴으로써 자발적인 검사를 유발하여 종합분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거창군 농업인에게는 분석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되 제4조 제2호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단서조항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은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거 창 군 의 회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갈망한다!)

최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구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청정 전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력공급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양수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 거창군에 유치될 경우 전력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파급효과가 있는 거창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주요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단·장주기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양수발전을 건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과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지는 가북면 용산리·우혜리 일원 약 91만^m²로 환경적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없으며, 수몰 예정지 내에 국공유지 비율은 70.5%로 높고, 수몰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해 최적의 수용성 확보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용량 600MW로 최대 700MW까지 확보가 가능하며, 수로 터널이 2.7km로 짧고, 기존 송·변전 시설과 연결이 양호한 점도 양수발전소 유치의 지리적 최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비용의 효율성(경제성)과 안전성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6만여 군민의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거창 양수발전소』를 선정하라.

2025년 6월 24일

거창군의회